의 안 번 호

743

[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의결의 건] 건 토 보 고

1. 검토경과

가. 제출일자 · 제출자 : 2010. 2.. 9 · 중구청장

나. 위원회 회부일자 : 2010. 2. 11

다. 위원회 심사일자 : 2010. 2. 22(월)

2. 제안이유

가.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,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및 울산광 역시중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

나. 구민 문화체육센터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을 위하여 이의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의회 의결을 득하려고 하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가. 계획의 총괄(취득대상 재산)

구	是	건	수량(m²)	금 액(백만원	비고
계				14,358	
매입	토지	12	11,651.40	3,875	구민문화체육센터
미립	건물	1	7,747.48	10,483	

나. 사업계획 (관리계획)

● 사 업 명: 구민문화체육센터 건립

● 위 치 :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동 산161-2번지 일원

● 부지면적 : 12필지, 11,651.4m²

● 규 모 : 지하1층, 지상4층, 건축연면적7,747.48㎡

● 주요시설 : 공연장,체육관,문화센터,주차장 등

● 추정가액: 14,358백만원

※변경내역(당초계획과의 비교)

구분		당 초 계 획 (2007.12.14의결)	변 경 계 획	증·감	
	계	9,461백만원	14,358백만원	증 4,897백만원	
토	대 상	• 9필지 10,347.7 m²	•12필지 11,651.4 m²	증 1,303.7㎡	
지	매입비	• 3,461백만원	• 3,875백만원	증 414백만원	
건	규모	• 지상2층 3,860 m² (체육관,문화예술회관	• 지하1,지상4층, 7,747.48㎡ (공연장,문화센터, 주차장등	증3,887.48㎡	
물	소요 예산	• 6,000백만원	• 10,483백만원	증4,483백만원	

● 취득사유

- 공연, 강좌 등의 다양한 문화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여 문화 복지를 구현하고,
- 체육 인프라를 구축 생활체육 활성화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도모

4. 근거법규

- 가.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
- 나.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항, 2항, 시행령 제7조 제1항 다. 울산광역시중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1조 제1항

5. 검토의견

- 가.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의 건은
 -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, 같은법시행령 제7조 및 울산광 역시중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
 - 구민 문화체육센터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에 따른 변경 계 획을 수립하여 이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득하려고 하는 것 으로,
- 나. 이는 생활체육과 문화복지 시설에 대한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를 위해 확충되어야 할 시설 로 판단됨으로 이에는 특별한 이견이 없음.
- 다. 다만, 이의 향후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.

《 관련 법령 》

[지방자치법]

제39조 (지방의회의 의결사항) 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.

1.~5 생략 6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·처분 7.~11 생략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.

【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】

제10조 (공유재산의 관리계획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<u>예산을 편성하기 전에</u> <u>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(이하 "관리계획"이라 한다)을 세워 그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.</u>

- ②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,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③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「지방자치법」 제39조제1항 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·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.

【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】

제7조 (공유재산의 관리계획)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(생략)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[생략] 및 처분(생략)으로 한다.

- 1.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. 이 경우 기준가격은 **토지에 대해서는** [생략]**개별공시지가**[생략], 건물의 신축·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비 등 토지를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사업비로 한다.
- 가. 취득의 경우: 20억원(시・군・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) 나.생략
- 2.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재산
 - 가. 취득의 경우: 1건당 6천제곱미터(시·군·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)
-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취득 · 처분의 목적이 변경되거나, 해당 토지 또는 시설물의 면적이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의 취득·처분에 대해서는 변경계획을 수립한다.

【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】

제11조(공유재산 관리계획) ①법 제10조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구청장이 다음연도 예산편성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하여야 한다. 다만, 연도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구의회의결을 얻어야 한다.

②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.

공유재산관리계획

2010년도 관리계획총괄표

회계명: 일반회계 (단위 : m², 천원)

구 분		당초(변경전)		증·감			계(변경후)				
		건수	수량	금액	건수	수량	금액	건수	수량	금액	
		토지	45	47,445	4,487,519	12	11,651.4	3,875,380	57	59,096.4	8,362,899
	계	건물				1	7,747.48	10,483,000	1	7,747.48	10,483,000
		기타	1	1	3,500,000				1	1	3,500,000
		토지	45	47,445	4,487,519	12	11,651.4	3,875,380	57	59,096.4	8,362,899
취	1.매입	건물				1	7,747.48	10,483,000	1	7,747.48	10,483,000
		기타	1	1	3,500,000				1	1	3,500,000
	2.교환	토지		이		하		빈		칸	
득	으로	건물									
	취득	기타									
	3.기타 취득	토지									
		건물									
		기타									
	계	토지									
		건물									
		기타									
-1	4.매각	토지									
처 		건물									
		기타									
	5.양여	토지									
분		건물									
		기타									
	6.교환	토지									
	으로	건물									
	취득	기타									